

---

- 2020년 4분기 주택건축본부 -  
**예산전용·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**

---

2021. 2. 26.(금)

**서울특별시**  
(주택건축본부)

# 2020년 4분기 예산 전용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55조의2(예산집행상황 등의 제출) 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3항에 따라, 주택건축본부 4분기 예산 전용 ·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## □ 전용내역

○ 예산전용 금액: 총 15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정책	단위	세 부	예산과목		예산현액	전용요구액		전용 승인 날짜
			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주 거 정비과	사람중심의 주택정비 사업 추진	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(도정)	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실시	사 무 관리비	사 무 관리비 (201-01)	190,000		15,000	11.17
			정비사업 분석 및 제도개선 용역	시설비	시설비 (401-01)	22,000	15,000		

## ○ 전용사유

- 법령(도시정비법 시행령, 국토부 고시) 개정에 따른 서울시 임대주택 건립비율 고시와 관련하여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 확정을 위한 사례분석 용역의 예산부족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전용함

## □ 예비비 사용 내역

### ○ 예비비 사용금액: 총 6,847,405천원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정책	단위	세 부	예산과목		예산현액	금회사용액		사용 승인 날짜
			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예산 담당관	일반예산 (예비비)	예비비	예비비	예비비	일반 예비비	-		<b>836,000</b>	11.25
주택 정책과	서민주거 안정도모	저소득층주 거안정도모 (일반)	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	전출금	공사공단 전출금	1,578,027	<b>836,000</b>		
예산 담당관	일반예산 (예비비)	예비비	예비비	예비비	일반 예비비	-		<b>411,888</b>	12.8.
공동 주택과	평생 살고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	시민아파 트정리 (일반)	시민·시범아 파트 정리 부당이득금 반환	배상금 등	배상금 등	859,803	<b>411,888</b>		
예산 담당관	일반예산 (예비비)	예비비	예비비	예비비	일반 예비비	-		<b>444,142</b>	12.11.
공동 주택과	평생 살고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	시민아파 트정리 (일반)	시민·시범아 파트 정리 부당이득금 반환	배상금 등	배상금 등	1,271,691	<b>444,142</b>		
예산 담당관	일반예산 (예비비)	예비비	예비비	예비비	일반 예비비	-		<b>5,155,375</b>	12.23
공공 주택과	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	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(일반)	재개발임대 주택 민사소송비	배상금 등	배상금 등	0	<b>5,155,375</b>		

### ○ 예비비 지출 사유

-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상가에 입점하고 있는 임차인 957개소에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지원(예비비 836,000천원)
  - 공공재산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계획(행정1부시장방침 제231호, '20.09.23)에 따라 예비비를 통한 결손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함

**<공공재산임차 소상공인 지원개요>**

- 지원대상 :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임차인

계(개소)	사옥상가	아파트상가	가든파이프 상가
957	10	427	520

- 지원기간 : '20.8월~12월(4개월)

- 지원내용 : 임대료 50%감면 및 공용관리비(청소·경비 인건비) 지원

- 지원액 : 835,061천원

- **시범아파트 정리사업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(예비비 856,030천원)**

- 옥인·용강·연희시범아파트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(신정3지구, 상암지구)한 아파트의 분양대금 산정 시 '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'을 포함한 것은 위법하므로, 우리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 소송사건이 접수됨(신정3지구: '14.10월 / 상암지구: '14.6월)
- 소송 결과 이 사건은 구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, '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'에 상당하는 비용을 원고 등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함

- **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**

-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 중 건축비 산정 시점에 대한 우리시와 조합의 이견으로, 과소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제기됨(금호15구역 '18.4월 / 하왕1-5구역 '19.3월)

※ 건축비 산정시기

- ▶ 조 합 : 지하층 건축비(사업시행인가 시), 지상층 건축비(매매계약 시)
- ▶ 서울시 : 지하층·지상층 건축비(관리처분인가 시/조례규정 적용)
- 소송 결과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 산정시기를 지하층건축비는 '사업시행 인가 시', 지상층건축비는 '매매계약 시'로 인정되어 패소('20년 12월)함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함